

공정거래위원회, 원사업자 서면실태조사결과

하도급대금관련 위반행위 가장 많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윤철)

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4백개 원사업자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만 91.6%가 하도급법 관련조항을 한 번 이상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대부분 어음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와는 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현재 조사중인 수급사업자 8백개사 응답결과를 대조·비교해 오는 10월경 허위응답업체 및 범위반 정도가 큰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편집자 註]

공정

거래위원회(위원장 전윤철)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4백개 원사업자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만 91.6%가 하도급법 관련조항을 한 번 이상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대부분 어음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총 19개 조사항목중 5개 이상을 위반한 업체도 28.3%나 되어 일반건설업체들의 하도급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선급금 미지급, 부당감액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것이 전체의 36.1%로 가장 많았고 수령거부 및 발주취소가 22.7%로 뒤를 이었다.

일반건설업체들은 공사대금 중 93.3%를 발주처로부터 현금으로 결제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33.3%만이 현금으로 지급, 수급사업자들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평균 결제기간이 60일 이하라는 응답은 27.5%에 불과했

위 반 행 위

| 위반행위 | 서면미교부 및 미보존, 검사결과서면 미통지 | 부당한 대금결정 | 대금지급관련(선급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부당감액,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 수령거부 및 발주 취소 | 물품 구입강제 | 부당한 결재청구 | 대금지급 미보증 | 부당한 대물변제 |
|-----------------------|-------------------------|------------|--|--------------|-----------|-----------|--------------|------------|
| 업체수: 1026 (100.0%) | 213 20.8% | 45 4.4% | 370 36.1% | 233 22.7% | 1 0.1% | 0 0.0% | 144 14.0% | 20 1.9% |



고, 90일 이하가 38.3%, 120일 이상도 34.2%나 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는 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현재 조사중인 수급사업자 8백 개사 응답결과를 대조·비교해 오는 10월경 허위응답업체 및 범위반 정도가 큰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도급거래감시 전산망(SCTMN)을 본격 가동하여 일반건설업체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SCTMN(Subcontract Transactions Monitoring Network)이 본격 가동되면 원사업자들의 대금지급 현황 및 범위반 행위 등이 한눈에 파악되어 상시 관리가 가능해질 것

으로 보고 있다.

■ 유형별 범위반행위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선금지급 미지급, 부당감액 등 하도급대금 관련이 36.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수령거부 및 발주 취소가 22.7%, 하도급계약서 교부 및 미보존·검사결과서면 미통지가 20.8%, 대금지급 미보증이 14.0%, 부당한 대금결정은 4.4%, 부당한 대물변제가 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건설업체들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중 93.3%를 현금으로 결제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33.3%만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일반건설업체가 무려 72.5%나 돼 당국

의 조속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음만기일이 60일 이하라고 응답한 업체는 27.5%에 불과했고, 61~90일이 38.3%, 91~120일이 27.9%, 121일 이상이 6.3%나 되는 등 장기어음 지급이 다반사이며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는 업체도 31.6%에 이르렀다.

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72.4%였고, 반면에 미사용 업체가 8.9%, 일부 사용한다는 업체는 8.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원사업자 서면조사결과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수급사업자 서면조사와 비교·분석하여 허위응답 및 범위반 사례 빈발 업체 등에 대해 현장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며,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한 서면조사를 대폭 확대하여 내년부터 조사대상업체를 연차적으로 늘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2만여 업체로 확대하고, 2003년부터는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표 발송 및 회수, 조사결과 입력, 분석업무 등은 민간조사전문기관에 아웃소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설비 *